

한식당 운영 재미동포 '요리계 오스카상' 수상



▲ 레이첼 양(오른쪽)과 남편 세리프 처치. © 레블 홈페이지

재미동포 요리사 레이첼 양이 '요리계 오스카상'으로 불리는 미국 제임스 비어드 상 '베스트 셰프' (Best Chef) 부문의 수상자로 선정됐다.

6일 '경향신문'에 따르면 제임스 비어드 재단(JBF)은 4일 시애틀에서 퓨전 한식당 '주율'과 '레블'을 운영하는 재미 한인 1.5세 양 씨와 남편 세리프 처치를 워싱턴, 오리건, 아이다호, 몬태나, 와이오밍, 알래스카 등 6개 주를 포함한 서북미 지역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.

양 씨는 미국 음식 TV 프로그램인 <셰프>(Chef)에 출연해 결승에 오르면서 이름을 알렸다. 양 씨가 2014년 문을 연 한식당 '트로브'는 2015년 미국의 대표적 요리전문 잡지 '본아페티'가 뽑은 미국 최고 50대 식당에 포함되기도 했다. 이들 부부는 2009년부터 4년 연속 제임스 비어드상 준결승에 올랐고 2015년부터는 매년 결승에 올랐지만 우승 문턱을 못 넘다 5전6기 끝에 서북미 한인 최초로 영예를 차지했다.

15살 때 미국행을 택한 양 씨는 브라운대학에서도 시공학을 전공했으나 전공을 살린 취업 대신, 다시 요리학교에 들어가 요리사로서의 인생을 시작했다. 당시 취직했던 식당 사장의 권유로 한식을 배우게 된 양 씨는 2017년 자신의 요리법을 담은 책 <마이 라이스 볼>(My Rice Bowl·나의 밥그릇)을 미국에서 펴내기도 했다.

제임스 비어드 재단은 미국 요리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요리사 겸 요리연구가 제임스 비어드(1903~1985)를 기리기 위해 1990년부터 매년 제임스 비어드상을 시상하고 있다. 미국 전역 2만여 개 식당과 소속 요리사를 대상으로 베스트 셰프·식당·제빵·서비스 등의 부문에서 수상자를 선정한다. 양 씨 부부가 수상한 베스트 셰프는 미국 전역을 10개 지역으로 나눠서 뽑는다.

영 김 후보, 다이아몬드바세리프국에 의료용품 전달

영 김 연방하원의원 후보(캘리포니아 39지구, 공화)가 지난 1일 월넷·다이아몬드바세리프국에 의료용품 1만1,000여 점을 전달했다.

김 후보는 이날 알프레드 레예스 월넷/다이아몬드바 세리프국장에게 물품을 전달한 후 "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."며 "39지구 내 월넷/다이아몬드바 세리프국에 의료물품을 전달해 매우 감사하고 행복했다."고 말했다.

김 후보의 선거 캠페인본부는 미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한 이후 개인,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의료 용품 기부 운동을 벌이고 그동안 지역 병원과 기관에 수천 개의 마스크와 기타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했다. 이번 의료용품 전달도 이 캠페인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졌다.

김 후보로부터 의료 물품을 전달받은 알프레드 레



▲ 지난주 영 김 후보(앞줄 가운데)와 선거 캠페인 팀이 알프레드 레예스 국장(앞줄 왼쪽)에게 의료보호 장비를 전달했다. © 영 김 선거 캠페인 팀

예스 월넷·다이아몬드바 세리프국장은 "모든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에도 대중 접촉을 피할 수 없다. 그러므로 늘 코로나19의 위험에 노출돼 있어 보호장비를 갖추는 것이 꼭 필요하다."며 "김 후보와 개인, 단체들이 지역민의 안전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경찰관들의 안전을 배려하고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."고 말했다.

미 시민권자, 한국 방문 시 자가 격리 가능 한국민 배우자, 직계비속 등 경우

한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책에 따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경우 14일간의 시설 격리 의무화에서 자가 격리로 방침이 완화됐다. 다만 한국 방문 외국인이 한국 내 국민 혹은 장기체류자격 외국인과 가족관계가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.

LA총영사관은 4일 홈페이지에 올린 '단기체류 외국인의 격리 관련 지침 변경 사항 (5.2시행)'이란 자료를 통해 위와 같이 공지했다.

자료에 따르면 자가 격리 전환 인정 사유는 ① 시설 입소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경우 ② 시설 입소 대상자가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의 배우자인 경우 ③ 시설 입소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직계비속인 경우 ④ 시설 입소 대상자가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의 직계비속인 경우(3항·4항: 시설 입소대상을 18세 미만 아동으로 제한했으나 연령 기준 삭제)

제)등이다. 자가 격리 인정 사유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 공적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, 자가 격리업 설치 확인 및 지자체 전담공무원에게 자가 격리 통보, 지자체 방침에 따른 진단검사 실시 등을 안내 받게 된다.

단 형제자매 방문 시에는 종전처럼 14일 동안 시설 격리에 들어가야 한다. 시설 격리 비용은 하루에 10만 원이며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. 다만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 검사 및 치료 비용은 한국 정부가 부담한다. 시설 격리 중 14일이 경과되기 이전에 출국을 희망하는 경우 출국이 허용된다. 이는 항공권 확보 등 출국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.

www.isemusa.com

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

PREMIER TAX GROUP

- 세금보고
- 연체세금 해결
- 법인설립
- 세무감사대행
- 해외자산보고
- 상속, 증여세금보고

**방문상담
가능**

대표 세무사 **이세진(Skyler S. Lee)**
공인세무사 (E.A.)
(전) 한국 삼일회계법인 / PWC 근무

Office **714.530.0030**
714.345.0762

5730 Beach Blvd, Ste. 202 ~ 203, Buena Park, CA 90621
*Garden Grove에서 Buena Park로 사무실 이전하였습니다
info@isemusa.com / taxcapital@gmail.com